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요청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중앙행정기관은 관할 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 등에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확인·점검 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점검·확인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규정(「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제3항)되어있는 바, 그 결과를 **'19.11.30. 까지** 여성가족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사이트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제도 안내→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 ※ [붙임2]의 기관 유형별 분류에 따른 소관과가 아니거나 추가하여야 할 경우 해당 부서에 전달 및 우리부에 통보 요청

붙임 1.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안내서 1부.

2. 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 소관과 현황 및 2018년 점검 결과 1부. 끝.

여성가족부장관



수신자 교육부장관(유아교육정책과장), 교육부장관(교원정책과장), 교육부장관(학교혁신정책과장), 교육부장관(교육협력과장), 교육부장관(교육기회보장과장),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장), 교육부장관(국립대학정책과장),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장), 교육부장관(전문대학정책과장), 교육부장관(이러닝과장), 교육부장관(학교생활문화과장), 교육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 교육부장관(특수교육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상콘텐츠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기반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서관정책기획단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문화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콘텐츠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장),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장),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보호환경과장),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장),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자립지원과장), 여성가족부장관(권익기반과장),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아동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의료자원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문화과장),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행정안전부장관(자치분권제도과장), 경찰청장(범죄예방정책과장), 산림청장(산림환경보호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오성미	사무관	소민정	아동청소년성 보호과장	전결 2019.2.15. 이금순
협조자					
시행	아동청소년성보호과-405	접수	주택건설공급과-1256	(2019.02.18.)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전화번호	02-)2100-6409	팩스번호	02-)2075-4776	/ dptlfm1@korea.kr / 대국민 공개	